

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12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18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·지원 및 육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조례의 제명을 연구원 명칭과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

○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

⇒ 충북개발연구원재산관리등에관한조례

나.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조)

다. 이사의 선임은 연구원 정관규정에 의함(제3조)

라.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중복사항 삭제

○ 설립·운영, 사업, 공유재산의 대부, 자료의 제공, 사업계획등 승인, 결산서 제출, 공무원의 파견, 비밀준수, 육성 및 지도 감독, 규칙제정 등

5. 검토의견

□ 충청북도 개발연구원 설치 및 육성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충북개발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고,
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

※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
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장관의
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2000년 1월 12일,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
관한 법률(법률제6121호)이 제정됨에 따라

법률과 조례가 중복되거나, 법률에서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
한 연구원의 설립·운영, 사업, 공유재산의 대부, 자료의 제공,
사업계획 승인, 결산서 제출, 공무원의 파견, 비밀준수, 육성 및
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

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관리, 이사의 추천에 관한
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며

조례의 제명을 개정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

“충북개발연구원 재산관리등에 관한 조례”로 정비하는 것으로
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□ 동법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이사의 추천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이유와
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(안)